

허용되는 금품등 상한액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또는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선물·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

금품등의 종류	상한액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단, 화환·조화 10만원)
선 물	5만원 (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음식물	3만원

* 주의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됨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됨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 최초 부정청탁 : 거절의사 표시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동일한부정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사 표시 (반환 관련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수사·조사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조치 사항 공개(소속기관장)

신고자 보호·보상

보호	- 불이익조치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비밀·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상	- 보상금(최대 30억원)·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목적 및 적용대상

목적

-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적용대상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등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지

금지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부정청탁 금지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금지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